

- 아.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안 제36조의2) 법 제36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승인 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조·보관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
- 자. 시험·검사기관 평가 기준을 보완(안 제40조)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차.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보완(안 제43조) 변경신고 등 법 개정사항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유통제품 조사 등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카. 보고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사유 변경(안 제46조) 정기 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로 변경함.
- 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및 신고 절차(안 제50조)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가진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하고,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를 위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7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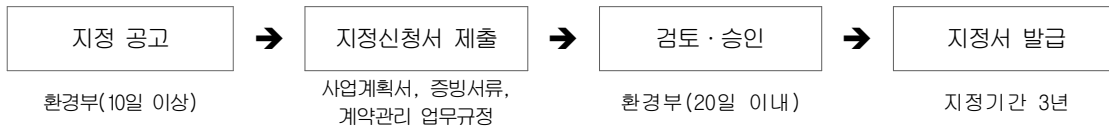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대기 1~2종 사업장, 수질 1~2종 사업장 등으로 지정

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대상 기관* 규정
 -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협회 등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기준(별표 1), 지정취소 기준(별표 1의2)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절차 규정



- 측정대행 전문 교육·훈련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업무 규정

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 *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시 국가기술자격 1년간 정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7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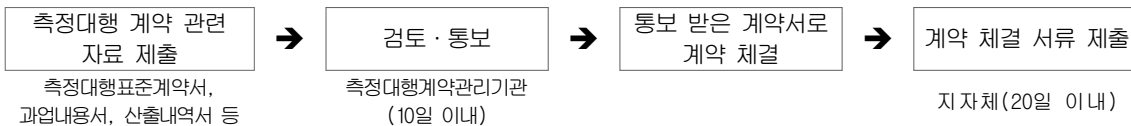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나. 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라. 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바.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